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8
----------	------

제출년월일 : 2009. 9.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종류 및 예방접종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방접종 사무의 위탁에 따른 위·수탁 주체에 관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종류 및 예방접종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예방접종 사무의 위탁에 따른 위·수탁 주체간의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8. 21. ~2008. 8. 30.(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계획(2008. 6. 3.)
- 안산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현행조례(전문)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DPT)

2. 폴리오(소아마비)

3. B형간염

②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0세아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셋째아 이상인 자녀

2.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제4조 제2항과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중 “위탁 의료기관” 을 “수탁 의료기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단원보건소 보진행정과장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보진행정과장 김의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출산장려담당 신영순
	담당자 성명·전화	김화영 (행정 351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와 1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범위는 「전염병예방법」 제11조와 제12조에 근거해 DPT, 소아마비, B형 간염에 대한 셋째아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DPT) 2. 폴리오(소아마비) 3. B형간염 ② 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0세아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셋째아 이상인 자녀 2.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2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②(..... "수탁 의료기관".....)
제5조(업무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했거나, 제3조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감독) ① ② 수탁 의료기관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수탁 의료기관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48
----------	------

제안년월일 : 2008. 9. 2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출산장려로 인한 접종대상 확대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탁 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를 수정함.

2. 주 요 골 자

- 위탁 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장려로 인한 접종대상을 확대함.
(안 제2조)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파상풍
5. B형간염

②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0세아로서 대상아나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디프테리아(DPT) 2. 폴리오(소아마비) 3. B형간염</p> <p>②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의 0세아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셋째아 이상인 자녀 2.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p>	<p>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파상풍 5. B형간염</p> <p>②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0세아로서 대상아나 대상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p>